지역상권 살리기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 살리기]

『지역상권 살리기』 콘텐츠는 지역상권의 특성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역 지정 절차와 상권 특성별 지원 및 혜택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에 대한 기반시설의 현대화와 온누리상품권의 도입 등과 같은 지원 정보도 제공합니다.

지역상권 살리기 1
1. 지역상권 알아보기 4
1.1. 지역상권 이해하기 4
1.1.1. 지역상권의 구분 4
2.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8
2.1. 지역상생구역 8
2.1.1. 지역상생구역 지정 및 운영 8
2.1.2. 지역상생구역 지원 및 혜택 10
2.2. 자율상권구역 13
2.2.1.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운영 13
2.2.2. 자율상권구역 지원 및 혜택 17
3. 시장 및 상점가 등 상권 20
3.1. 상권활성화구역 20
3.1.1.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20
3.2. 시장 및 상점가 등 활성화 지원 22
3.2.1.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22
3.2.2. 온누리상품권 도입 26
3.2.3. 경영현대화 및 판로 촉진 30

1. 지역상권 알아보기

1.1. 지역상권 이해하기

1.1.1. 지역상권의 구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상권

"지역상권"이란?

▪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함)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지역상권을 구분하는 기준은 크기, 입지,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하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책상 구분하기도 합니다.

구분	산업형 상권 직(職)	근린형 생활상권 주(住)	교통·관광형 테마상권 락(樂)
입지	오피스지역, 제조·가공·물류단지 등과 연계된 상권 (중소형)	주거지, 학교 인근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연계된 상권 (초소형)	교통중심지 또는 관광지 등과 연계된 상권 (중소형)
주요 고객층	제조·가공업 종사자, 도·소매, 유통·물류업자 거래고객 등 일반인 등	직장인, 주부, 학생 등 인근지역 거주민	여행객, 관광객, 관련업계 종사자 등
상권 특징	제조가공업 중심으로 서비스, 도소매, 물류 등 다양한 업종 융합	배후지 거주민 대상 생활편의, 생필품 먹거리 중심으로 발달	가치·경험 등 목적지향형 소비 위한 상품·콘텐츠 발달
사례	남대문시장(패션·금속가공) 거제고현시장(조선소)	대전한민시장(아파트단지) 울산동구시장(학교·주택가)	황리단길(관광지 연계) 정선시장(아리랑 문화체험)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 12쪽]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이란?

▪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권 중에서 상권특성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대상지역 구분	활성화구역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개요	임대료 상승 지역	상권 쇠퇴 지역
구역대상	상업지역 50% 이상	
	점포 100개 이상	
조직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
지원	-	온누리상품권 가맹, 상권활성화사업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지방세·부담금 감면, 대수선비 융자 등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 7쪽 참조]

※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에서,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지역상권 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

"상권"이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은 전통시장,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을 연결한 지역을 말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및 제2조제1호·제2호·제2호의2 참조).

▪ 전통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를 하나 이상 포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곳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참조).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시장 및 상점가 등 상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권의 구성 단위

▪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인정하는 곳을 말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전통시장 요건

1.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 이상이 밀집한 곳일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제외한 일반업무시설(「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50% 미만일 것
3.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일 것

√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함)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곳

√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곳

▪ "상점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

상점가 지구 유형

1. 2천㎡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함)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

①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

②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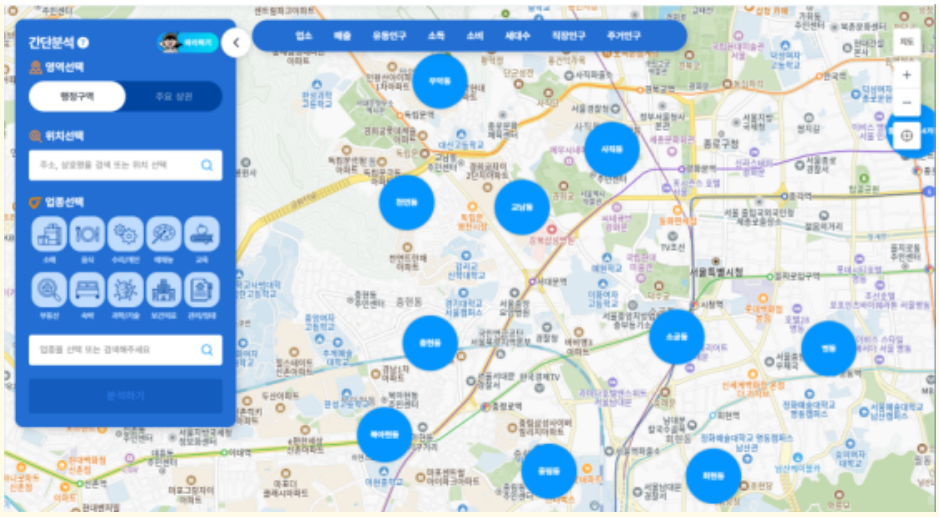
③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위 ②에 따른 점포 수의 50% 이상일 것

▪ "골목형 상점가"란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본문).

▪ 다만,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단서).

※ 지도로 보는 전국 상권 정보

• 소상공인365 홈페이지(https://bigdata.sbiz.or.kr)에서 전국의 상권 정보를 확인 및 분석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상공인365 홈페이지(https://bigdata.sbiz.or.kr)-빅데이터 상권분석-상권분석]

※ **지역상권 쇠퇴 및 활성화 사례**

• **쇠퇴 사례**

(경리단길) ~리단길의 원조로서, 입지적 여건으로는 대규모 상권의 형성이 어려운 지역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특색 있는 음식점과 거리 분위기 등이 알려지면서 성장함. 그러나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의 상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대기업 직영 점포의 진출로 상권 특유의 개성이 죽어버린 결과 쇠퇴됨

(이대·신촌 상권) 한때 가장 활성화되었던 대학가의 대표 상권이었으나, 대형 브랜드와 쇼핑몰의 진출로 지역 고유의 매력을 잃고 쇠퇴됨

•**활성화 사례**

(성심당 스트리트) 1956년부터 이어진 대전의 로컬 빵집 성심당은 맛과 합리적인 가격 등으로 입소문을 타며 단지 성심당을 가기 위한 여행을 떠나는 ´빵지순례객´들까지 대전으로 불러 모으고 있으며 주변 가게들과 함께 성심당 스트리트를 이루어 활성화 됨

(황리단길) 경주 황남동 포석로 일대의 “황남 큰길”은 낡은 건물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옛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거리로서, 몇 해 전부터 젊은층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예쁜 카페나 식당, 사진관 등이 들어서고 인근의 첨성대, 대릉원 등의 관광지를 함께 둘러 볼 수 있는 장점으로 경주여행의 필수 코스가 됨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 참조]

2.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2.1. 지역상생구역

2.1.1. 지역상생구역 지정 및 운영

지역상생구역 요건

"지역상생구역"이란?

▪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지역상생구역 요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곳 2. 해당 구역 안에 각각 100개(「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3.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함)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5% 이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곳

※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함)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운영주체인 "지역상생협의체"

조직구성

▪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지역상생구역"이라 함)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는 각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분야 법률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지역상생협의체의 위원 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점포 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
- 그 밖에 상권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는 지역상생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4항).

신고사항

▪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의 취지
- 대표자 및 위원의 성명·주소
- 지역상생구역 지정 준비 및 운영계획

업무범위

▪ 지역상생협의체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한받는 영업에 대한 사전 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 지역상생구역의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
-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해제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	▶	주민·전문가 의견청취 및 공청회	▶	심의	▶	승인	▶	지정
지역상생협의체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상권위원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정 신청

▪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는 지역상생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지역상생구역 지정동의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이 경우 하나의 점포에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상시영업상인"이라 함) 또는 임대인이 여럿이거나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여럿이고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대표자 지정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대표자 및 위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구역경계도
-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서 사본
-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원들이 협의한 회의록

승인 신청 및 공청회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검토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본문).

▹ 지역별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할 것

▹ 지역상생구역 요건(「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을 모두 충족할 것

▹ 상생협약이 마련되어 있을 것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계획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를 통하여 상시영업상인 및 임대인 등에게 알리고, 공보와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 공청회의 개최 목적

√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개요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청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심의 및 승인

▪ 시·도지사는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본문).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항 단서).

▪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7항).

지정 및 공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8항).

지정 해제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지역상생구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지역상생협의체가 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지역상생구역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1.2. 지역상생구역 지원 및 혜택

특정 업종 제한

제한되는 업종 종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영업 및 시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점포의 경우 연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체인본부가 직영하는 점포에 한정)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협의 및 심의

▪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금지·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

▪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하기 전에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본문).

▪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며,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7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영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공보와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8항).

※ 위에 따른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제5호 및 제38조제1항제5호).

임대료 인상 제한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 제한

▪ 지역상생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상생협약”이란?

-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임대인 등은 해당 구역 내 상인, 임대인 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상생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 임대료의 안정화를 위한 사항
  - ·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 ·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의 혜택과 지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상생구역의 “판매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해당 시설면적 300㎡당 1대로 완화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그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 및 융자 혜택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생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자금 및 융자 지원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 상인 및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

건물 또는 토지 매입·임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지역상생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청년상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

빈 점포 활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 상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위한 장소
-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를 위한 장소
-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시설 또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장소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2.2. 자율상권구역

2.2.1.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운영

자율상권구역 요건

"자율상권구역"이란?

▪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

자율상권구역 요건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곳 2. 해당 구역 안에 각각 100개(「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3.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함)의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한 곳

운영주체인 "자율상권조합"

준비위원회 설립

▪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비자율상권구역"이라 함)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준비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

▪ 준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 및 제6항).

▹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2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7항).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

▪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정관

▹ 사업계획서

▹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 그 밖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봅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조합원의 자격

▪ 자율상권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자율상권구역(자율상권구역 지정 전에는 예비자율상권구역을 말함) 내 상인

▹ 자율상권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 다만, 조합의 설립목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 및 지역 공공기관 등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조합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조합의 업무

▪ 자율상권조합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변경 신청

▹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약 체결 지원

▹ 교육·경영지원 사업

▹ 환경·영업시설의 정비 사업

▹ 자율상권구역의 특성화 사업

-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이 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 지역특화상품의 개발·판로지원·홍보 등 지원
- 축제·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 상인 등에 대한 교육·경영 지원
-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상권 전문관리자 의무 등록

▪ 자율상권조합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권 전문관리자를 두어야 하되, 10명 이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의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의 임원이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 "상권 전문관리자"란 경영, 경제, 상권분석, 부동산,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문화 또는 관광 등 상권 관련 분야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
>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이 있는 사람
>
> ·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사 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이 있는 사람
>
> ·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해제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	▶	주민·전문가 의견청취 및 공청회	▶	심의	▶	중소벤처기업부 협의 후 승인	▶	지정
자율상권조합		시장·군수·구청장		지역상권위원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정 신청

▪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는 자율상권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자율상권구역 지정 신청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자율상권구역 지정동의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이 경우 대표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대표자 지정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대표자 및 위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구역경계도

▹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서 사본

▹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자율상권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회의록

승인 신청 및 공청회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검토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본문).

▹ 지역별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할 것

▹ 자율상권구역 요건(「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을 모두 충족할 것

▹ 자율상권조합의 재원조달 및 운영방안이 타당할 것

▹ 상생협약이 마련되어 있을 것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승인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공청회 개최계획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를 통하여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및 임대인 등에게 알리고, 공보와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 공청회의 개최 목적

√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

√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개요

√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공청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

심의·협의 및 승인

▪ 시·도지사는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본문).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역상권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단서).

▪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

지정 및 공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을 때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관보나 공보에 공고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지정 해제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자율상권구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자율상권조합이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각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
-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의 참여 기피,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자율상권구역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지정목적에 따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자율상권구역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2.2. 자율상권구역 지원 및 혜택

온누리상품권 사용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및 자율상권조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온누리상품권>과 이 콘텐츠의 <시장 및 상점가 등 상권-시장 및 상점가 등 활성화 지원-온누리상품권 도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

경영 현대화 및 판로촉진을 위한 지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 지역특화상품의 개발·판로지원·홍보 등 지원
- 축제·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 상인 등에 대한 교육·경영 지원
-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상권활성화 사업'은 2024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추진 및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지자체 설명 자료』(2024), 1쪽 참조].

임대료 인상 제한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 제한

▪ 자율상권구역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5% 비율 이내에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 "상생협약"이란?

-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의 점포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임대인 등은 해당 구역 내 상인, 임대인 등 각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상생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임대료의 안정화를 위한 사항
  -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의 혜택과 지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자율상권구역의 "판매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해당 시설면적 300㎡당 1대로 완화합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그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 및 융자 혜택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상권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자금 및 융자 지원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 상인 및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

건물 또는 토지 매입·임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자율상권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 자율상권조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청년상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

빈 점포 활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내 빈 점포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1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 상인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또는 행사를 위한 장소
-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를 위한 장소
-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시설 또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장소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3. 시장 및 상점가 등 상권

3.1. 상권활성화구역

3.1.1.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상권활성화구역"이란?

▪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곳
3. 해당 구역 안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예정구역"이라 함)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구의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경우: 700개

√ 예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구의 인구가 50만명 미만인 경우: 400개

4.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있는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함)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함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지역상권 알아보기-지역상권 이해하기-지역상권의 구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해제

지정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

▹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구역경계도
-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승인 신청 및 의견청취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다음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3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신청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 기초조사서
-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 구역 지정의 효과
- 구역경계도
-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 주민의견서

협의 및 승인

▪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1항 후단).

지정 및 공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제2항).

지정 해제

▪ 지정된 상권활성화구역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3제1항).

- 상권활성화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 ※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상권활성화 사업'은 2024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추진 및 운영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지자체 설명 자료』(2024), 1쪽 참조].

3.2. 시장 및 상점가 등 활성화 지원

3.2.1.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지원

건물, 비가리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

시설 대상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의 상인조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또는 시장관리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가 추진하는 다음의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구분	내용
상업시설 (영업에 직접 제공되고 상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가. 시장 건물 외벽의 리모델링 나. 시장 건물 내·외부 또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및 수선 다. 건물 및 시설물 안전의 보강 라. 화재예방 시설의 개량, 보수 및 수선
공동시설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가. 비 가리개, 공동창고 및 상인교육시설의 설치·개량 나.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및 공동작업장 등의 설치·개량 다. 전봇대 이설 및 지하매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 라. 냉·난방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마. 관광(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연장 및 조형물 등의 설치·개량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가. 주차장, 진입로 등의 설치·확장 및 보수 나.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등의 설치·확장 및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확장 및 보수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
공설시장	건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

※ “상업기반시설”이란?

-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동의 요건

▪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사업 구분		동의 요건
비 가리개를 설치하는 시설현대화사업		·다음의 동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 √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
그 밖의 시설현대화사업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
	상인이 시설현대화사업에 드는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3 이상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Q. 시장 규모도 커지고 방문객도 많아져서 주차장을 새롭게 건설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런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주차장 건립·개·보수 지원 및 전통시장 인근의 공공·사설주차장 보조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7조 참조).

해당 사업은 전통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함)로서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시장관리자 등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3조 및 제5조 참조).

1.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
2.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3.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

4.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 상인의 60%) 이상인 시장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6.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7. 건립사업 신청 시 건립 예정 부지를 미리 매입한 시장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654쪽-657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안전관리

안전시설물 등 점검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화재·풍수해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5항).

점검대상
1.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2. 비 가리개, 창고, 상인교육시설 등 공동시설 3. 점포 4.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시설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다만,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점검, 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점검에서 제외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제1항 단서).

※ 전통시장 화재 등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①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노후전선, 화재알림시설, 가스안전시설 등 개별점포 내 안전시설의 설치·정비를 지원), ②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소방·전기·가스 분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교육 등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658~660쪽, 676쪽~677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제1항).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제2항).

Q.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디에서 가입할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및 상인조직이어야 하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제1항), ①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② 재고자산, ③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을 가입목적물로 합니다(『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673쪽).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공제계약(공제운영요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를 낼 것과 공제금의 지급을 받을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공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제2항 및 제4항).

※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화재공제 홈페이지(https://fma24.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의 효율적 운영

점포 배치의 효율화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인들이 점포의 통합이나 재배치, 여러 점포로 구성된 판매 공간의 재구성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빈 점포의 활용 촉진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빈 점포의 활용 용도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탁아 시설의 설치 장소
4.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5.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6.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7.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8.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
9.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을 통하여 거래된 상품의 집하 및 배송 장소
10. 창업 실습 공간
1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자동으로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제어하는 재배실과 그 농작물의 판매장
12. 고객 유치를 위한 지역 예술인의 창작공간
13. 그 밖에 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14. 그 밖에 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함)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3.2.2. 온누리상품권 도입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종류

상품권 발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포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

온누리상품권(종이상품권)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발행중지)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온누리상품권-지류상품권]

상품권 종류

▪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

- 종이상품권: 5천원, 1만원 또는 3만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5만원 또는 10만원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1회 충전금액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

상품권 종류별 비교

▪ 상품권의 종류별 사용방법, 할인율 및 구매한도 등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온누리상품권-온누리상품권 안내].

구분	지류 상품권	디지털 상품권
종류	5천원권,1만원권	구분 없음
구매처	16개 금융기관 (전국 지점)	전용 앱 (디지털온누리)
사용처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에서 확인('26.2월 신규 오픈 예정) * 디지털 상품권의 경우 온라인 사용가능(앱 내 안내)	
사용방법	은행에서 구매한 후 가맹점에 상품권 제시 (현금결제 방식과 동일)	전용 앱에서 구매한 후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 스캔 또는카드 결제 (카드는 기존 카드결제 방식과 동일)
할인율/구매한도	• 할인율 5% • 구매한도 : 월 50만원	• 할인율 7~10% * 법인구매 할인 없음 • 구매한도 : 월 100만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점의 등록

▪ 온누리상품권의 개별가맹점(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 등의 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은 다음의 서류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제26조의4제1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제3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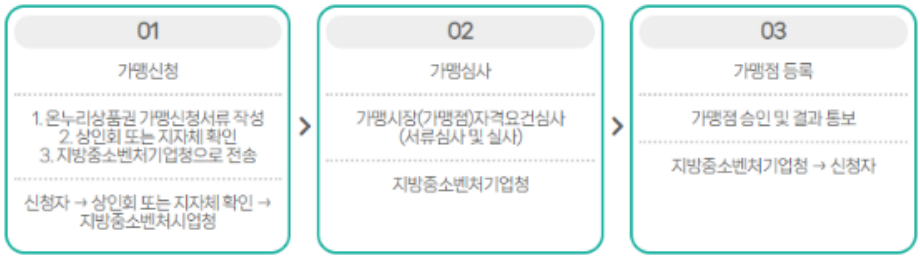
-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 점포의 내·외부 현장 사진(외부 사진의 경우 점포명 또는 상호가 명확히 보여야 함)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노점상인의 경우에만 해당함)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위에 따라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상인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제3항 참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6제4항 및 제33조의2제1호).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위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제6항 본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호).

▪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제9항).

온누리상품권 신청 및 등록 절차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송부(팩스 또는 우편)**
-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관리 시스템(https://ongift.or.kr) 접속하여 가맹등록신청 진행**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기존 지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인 경우에는 카드 단말기만 있으면 별도의 가맹이 필요 없습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온누리상품권-가맹점 가입안내/디지털상품권 참조]

▪ 온누리상품권의 환전대행가맹점(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으로 등록하려는 상인조직은 온누리상품권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신청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에 상인회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나목 및 제26조의4제1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5항).

▪ 가맹점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가맹점 등록갱신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제10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7 및 제33조의2제1호).

가맹점의 준수사항

▪ 개별가맹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제1항).

▹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여한 환전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다음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2.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3. 가맹점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온라인 쇼핑몰, 행사 등에서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은 제외)

▹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

▹ 제3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판매·회수·환전하는 등 유통·사용하는 행위

▪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제2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9).

▪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제3항).

▹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위 1. 및 2.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여한 환전대행한도를 초과하여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의 취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기간 동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아래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6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2. 등록 제한업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제2항)을 영위하는 경우
3. 가맹점 준수사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위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0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6제3항).

※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온누리상품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3. 경영현대화 및 판로 촉진

결제 및 관리시스템 개선

거래시스템 현대화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함) 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등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판로촉진을 위한 지원

공동사업 활성화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 상품, 상표, 포장용기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 구매,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사업
-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 지원에 관한 사업
-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표시·설치 등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홍보에 관한 사업
- 시장 등에서 개최하는 중고품 매매·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시장의 상권활성화에 관하여 자문 또는 지도를 하거나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상품개발 등을 상인조직과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조).

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대규모점포(여러 점포에 도·소매업과 용역업이 섞여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은 제외함)를 운영하는 자에게 그 주변 시장과 협력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 시장경영지원사업
>
> Q. 시장 전체의 발전을 위해 상인들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교육이나 자문을 받거나 공동의 경영인력 및 배송인력을 고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시장경영지원사업”을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경영지원사업”은 주어진 범위에서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4개 사업부문(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662쪽 참조).

이 사업은 "역량강화"와 "인력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663쪽 참조).

구분	사업부문	사업 내용
역량강화	상인교육	•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경영자문	• 일반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 •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인력지원	시장매니저	• 상인회 일반 행정사무 및 행정관리 업무 수행 – 회계·사무 등 행정업무, 정부보조사업 관리업무, 상품권 관리업무 등
	배송매니저	•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동 택배, 배달 등의 주문 및 배송의 관리 • 근거리 직접 배송의 운영 및 관리

※ "시장경영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상권·시장활성화-시장경영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특성화 지원

시장의 특성별 육성

▪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제1항).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전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에 따라 지정된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제3항).

-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량
-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개발과 판매시설 설치
- 지역특성을 반영한 축제·행사·문화공연, 문화환경의 조성 및 홍보
- 시장·상점가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상품 및 문화·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
- 문화관광형시장의 상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교육
- 그 밖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전통시장 육성사업

Q. 저희 시장 주변에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특성을 살려 시장을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개별 시장의 특성에 맞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668-669쪽 참조).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사업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편』 669~670쪽 참조).

구 분	지원 내용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 전통시장 내 빈공간을 활용하여 복합문화공간, 공동판매장, 문화 교류 공간 구축 등 지원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체험, 축제 등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백년시장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 시장 중 경제·사회적 가치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이 있는 전통시장을 선정하여 지역 랜드마크로 육성 오랜 세월 속 백년시장이 가진 지역내 경제·문화·사회적 영향력을 상징성 있게 스토리화, 이를 바탕으로 사업기반 조성 환경 구성(점포 인테리어, 테마거리, 공용공간 등)을 통해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지원 의식주 체험, 굿즈, 레시피 등을 개발하여 새로운 수익원 창출

※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지원사업-상권·시장 활성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어민직영매장 설치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공설시장(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이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을 직접 소매할 수 있는 매장인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인력개발을 위한 지원

청년상인의 육성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상인(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 등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 창업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창업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